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3124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환급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6. [redacted]시 B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아스콘 제조 판매업,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8. 1. 15. 본점 소재지를 '[redacted]시 C'[1]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2. ㈜D으로부터 [redacted]시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2] 공장용지 7,601㎡를 비롯한 [별지1] 매매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 및 건물[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4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대금 40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160,000,000원, 지방교육세 1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설립경위, 대표이사 및 주주의 구성, 사업장, 매입·매출처의 승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고의 설립은 2006. 경 설립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상호만 바뀐 형태여서 별도의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6. 1. 위 경

1) '[redacted]시 H에 해당한다.
2) 그 도로명 주소는 '[redacted]시 I'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F 지상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J동 내지 K동 건물 6개동을 함께 매수하였으나, 이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다만 원고는 그 후 위 지상에 단층 공장 L동 및 2층 공장 M동을 신축하여 2018. 12. 18.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8.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N은 2015. 8. 12. 오직 아스콘 허가명의를 취득하기 위하여 G을 인수한 후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이고, G은 2015년경 영업을 할 공장건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자산 등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있지 않았으며, N은 2017. 6. 21. 원고 회사 명의로 G으로부터 아스콘 공장설립 허가를 이전받아 공장설립변경 승인을 득한 이후 2017. 7. 2. O에게 G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G과는 별개의 회사로서 N이 신규로 설립하여 창업한 법인에 해당하고, 단지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창업 또는 조직변경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6항 각 호 중 어느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8항에 따라 원고 회사가 인수한 자산 가치(= 아스콘 허가 명의 대가 1억 원)는 원고 회사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 64억 원(= 1억 원 + 40억 원 + 23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에 불과하여, '그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분의 30 이하인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 만일 지특법 제100조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근거한 처분이라면, G은 인수 당시부터 껍데기뿐인 회사로서 원고 회사를 설립한 N이 직접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을 별도로 40억 원에 매수하고 아스콘 생산 설비 대금 23억 원을 부담하는 등 단순히 회사 명칭만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적 설비 등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지특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근거하였다면, 원고 회사는 G의 허가 명의 외에 모든 물적 자원을 스스로 새롭게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이나 매출처를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창업을 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G은 2015. 8. 17.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위 장소에서 2015. 9. 16. 원고 회사가 설립된 점, ② 원고 회사는 G과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업태 및 종목이 동일한 '아스콘 제조업'인 점, ③ N은 2015. 8. 15. G의 주식 20,000주(지분 100%)를 매입한 뒤 2015. 8. 18. G의 사내이사로 취임등기 한 후 이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운영하는 상태에서 2015. 9. 16. 원고를 설립한 점, ④ N은 G을 운영하며 원고로 명의만을 변경할 의도에서 G 및 원고를 공동의뢰인으로 하여 인허가 토목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N이 원고를 설립한 것은 '새로 설립'으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창업 제외 대상인 지특법 제100조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① G은 2006년 설립된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한대로 소득 등 실질내용에 따라 이미 2012년 이전에 폐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2012년 이전에 G이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② G의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N은 G의 사실상 폐업 이후인 2015. 9. 16. G의 본점 소재지에 원고를 설립하였고, 그 허가권을 이용하여 이미 폐업이 이루어진 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 ③ 원고는 2017. 5. 15. G으로부터 아스콘 공장설립허가를 이전받아 공장설립변경 승인을 받은 후 G을 O에게 양도하였는바,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운영의 의도가 없었기에 자본잠식 당한 G을 주당 1원에 인수하거나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아스콘 허가명의만은 필요하였기에 인수하였다는 것은 변칙적인 법인 설립방법으로 위 제3호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며, 이는 원고가 인적, 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지특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인데, N은 기존 아스콘 영업과 관련된 허가에 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한 명의를 양수하여 원고를 설립하여 같은 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시적인 사업을 창출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위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5. 12. 11.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2018. 4. 16.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2018. 6. 1.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지특법 부칙(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제1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구 지특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적용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중소기업창업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및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바,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3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한편, 구 지특법 제100조 제1항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위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경감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 구 지특법 제100조 제1항 및 제6항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례 규정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구 지특법 제100조 제6항 각 호에 관한 주장을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4].

2) 관련 법리

가)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등 규정이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하여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를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아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4) 즉, 2016. 12. 27. 개정된 지특법에서 신설된 제58조의3 제6항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곧바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은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는 개정 지특법상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와 다소 내용을 달리하므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나)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참조).

다) 한편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구 지특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 항에서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감면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그것이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5]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두783 판결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16. 아스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 개시는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 2016. 12. 27. 지특법 개정에 따라 제58조의3 규정에 신설된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같은 조 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의 전제가 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G은 2006. 6. 27. '[redacted]시 Q'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아스콘 사업, 레미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6. 6. 29.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 후 G은 2012. 5.~6.경까지는 위 장소에서 아스콘 제조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1. 및 2012.경 [redacted]공사에서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간 이 후 2012. 5.~6.경 그 공장시설물 및 사무실이 철거되었고, 더 이상 공장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하였으며, 2013. 10. 모회사의 부도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② N은 당시 G의 대표이사였던 P에게 G의 사업자면허 등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15. 8. 15. G의 주식 20,000주(지분 100%)를 1주당 1원씩 합계 금액 총 20,000원에 매입하고, 2015. 8. 18. G의 사내이사로 취임 등기를 마치고 2015. 8. 17. 그 본점 소재지를 '[redacted]시 B'으로 이전하였다. 그로부터 불과 1개월이 지난 2015. 9. 16. 원고 회사는 G의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N에 의하여 G과 같은 장소에 설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스스로도 N이 아스콘제조업의 허가 명의만을 변경할 의도에서 G을 1억 원에 인수한 것이고, G 및 원고를 공동의뢰인으로 하여 인허가 토목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③ 원고 회사와 G은 모두 그 업태 및 종목이 동일한 '아스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나아가 N은 2017. 5.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G 명의의 공장설립승인을 원고 회사 명의로 변경하고, 동일한 공장부지에 관하여 공장설립허가 면적만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이전)변경승인 신청을 함으로써 공장설립 승인의 주체를 G에서 원고 회사로 이전받았다.

	당초 승인	변경 승인
회사명	G	**원고**
대표자	N	N
소재지	F	좌동
업종 (분류번호)	아스콘 제조업 (23991)	좌동
공장부지면적	4,054㎡ (부지: 4,029㎡/도로: 25㎡)	**3,471㎡** (부지: 3,446㎡/도로: 25㎡)
제조시설/부대시설 면적	제조시설: 178.75㎡/부대시설: 264.06㎡	제조시설: 300㎡/부대시설: 311.40㎡
비고	명의, 면적 변경 등	

④ 이상의 사정은 아스콘 제조업의 영위에 필수적인 '공장부지의 취득 및 공장설립허가'를 이전받기 위하여 N이 동시에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 회사와 G이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면서 그 실질을 공유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N은 두 회사의 공동명의로 토목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설립은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 회사와 G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의 임직원 등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도 볼 수 없어 위 시행령 같은 제1호의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한편, G은 이미 2012. 5.~6.경부터 실질적인 생산활동 및 소득이 발생하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않는 등 영업활동을 중단하여 사실상 폐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2012. 이전에 G이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N은 2015. 8. 12.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운영의 의도 없이 자본잠식 상태의 G 전체 주식을 총 2만 원에 인수하였고, 2015. 9. 16. 원고를 설립하고 공장설립승인 변경 절차, 공장부지 매입 및 공장 건물 신축 등을 거쳐 2017. 7.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구 중소기업창업법 및 시행령 규정의 문언형식상 원고가 G을 승계하거나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기존 사업체의 인적, 물적 자산을 승계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⑦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취지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취지이고,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등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영위한 경우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다. 그런데 N은 기존 아스콘 영업과 관련된 허가에 관한 명의를 양수하여 원고를 설립한 다음 G의 공장설립허가 명의를 이전하여 같은 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한 점, G이 사실상 폐업 후 승계할만한 기존 자산이 없었다고 하나, 아스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권 또한 이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의 경우 G이 영위하던 기존 아스콘 사업과의 동일성을 전제로 할 뿐, 그 자체로 원시적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⑧ 따라서 N이 원고를 설립한 것은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새로 설립될 것'을 전제로 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N으로서는 2015. 경 G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이미 4년의 경과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를 새로이 설립하는 변칙적인 형태의 방법을 이용할만한 경제적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회사의 설립이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소정의 '창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취득세 경감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별지1]

매매 부동산 목록

1. 토지 :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공장용지, 7,601 ㎡

2. 토지 :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도로, 520 ㎡

3. 건물 :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위지상

[redacted]동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789.28 ㎡

[redacted]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공장 1층 206.11 ㎡, 2층 199.26 ㎡, 3층 199.26 ㎡

[redacted]동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363 ㎡

[redacted]동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처붕 단층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54 ㎡

[redacted]동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우레탄판넬) 단층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1.2 ㎡

(이하 여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부 칙<제14477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2016. 9. 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끝.